

2021 제1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 프랑스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영국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독일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외국법제동향

- 독일 민법상 중개수수료 규정 관련 최신 동향
- 중국 수출규제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 캐나다 아동학대 방지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프랑스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체계 및 주요 내용

2021 제1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신청기관: 국가보훈처

영국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박재훈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I. 들어가며

‘국가보훈’은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살피고 예우하는 등 응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아 애국하는 것이 숭고한 일임을 일깨우는 활동이다.¹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보훈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보훈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다.²

보훈의식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과 이념적 분열을 완화하여 사회적·국민적 통합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이 단순히 물질적 성장과 배분 이외에도 국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확립하고 강화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³ 따라서 구성원 개개인의 보훈의식 함양을 통해 사회전체에 보훈문화가 확산될 경우 국민, 사회, 그리고 국가 통합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훈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은 국가의 안보역량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국민들의 보훈의식과 보훈문화가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보훈기념행사의 경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훈의 의미전달 및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⁴ 보훈교육의 경우에도 정책대상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함

1 전신욱·신윤창, “한국 보훈문화의 정립실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79~80면 참조.

2 박용성, “국가보훈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 정책변동모형을 결합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2, 2015, 159면 이하; 서운석, “한국민의 보훈의식에 대한 인과구조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1, 183면 이하 참조.

3 박중훈·류현숙·김유희·박정우,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6면 이하 참조.

로써 보훈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⁵ 이는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보훈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훈문화 확산과 선양정책의 목표는 국가를 위해 공헌 및 희생 당사자의 명예 존중과 전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명예현장(서훈, 기록보존, 추모록 발간), 기념행사(기념일, 보훈 추모행사), 기념사업(시설물, 사적지, 국립묘지 관리), 보훈문화교육(교육과정 참여 및 문화공간 참여, 자료제작 및 보급) 등이 있다. 특히 보훈선양 정책은 사업추진에 따른 대국민 정책홍보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즉, 보훈선양 정책과 관련한 상징적 메시지의 공유를 기초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책홍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최근 급격하게 발전한 스마트 모바일 기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사회·역사적 배경에 맞는 보훈제도와 조직으로 보훈정책 및 선양정책 홍보를 중앙정부와 분담⁶하고 있는 영국의 보훈제도와 국가차원의 보훈기념 및 추모행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주요 보훈 추모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훈문화 확산 및 선양정책과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영국의 보훈제도 연혁 및 관련 법령

1. 보훈제도 연혁⁷

영국은 1590년경 국가를 위한 희생자 및 군 복무 중 사상자 지원을 위하여 채섬기금(THE CHEST AT CHATHAM, 1590-1803)⁸을 마련하고, 1682년 찰스 2세 때 20년 이상 복무자 및 전상자를 위한 병원과 안식원을 겸한 왕립병원 Chesla를 건립·운영하였다. 1696년 메리여왕 재위 시, 연금을 받는 해군 및 상선선원을 위하여 그리니치 병원을 건립하고, 1803년 해군위원회(Navy Board)에서 관장하던 채섬기금(Chatham Chest) 관리업무를 the Royal Greenwich Hospital로 이관하였다.

4 이흥재·차용진, “보훈 관련 정부기념행사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 대학생 인식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1호, 2016, 85면 이하.; 정원준·최진봉, “공중의 세분화로 분석한 국가 보훈행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참여도 차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보훈 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 「홍보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4, 248면 이하 참조.

5 최수웅, “해외 한민족 문화작품을 활용한 보훈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7권 제1호, 2008, 125면 이하 참조.

6 그에 반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베트남,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따로 보훈 기구를 두지 않고 사회보장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7 한국보훈학회,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 영국·캐나다·이스라엘·일본·중국 -”, 2006. 12. 2면 이하 참조.

8 <https://kentarchaeology.org.uk/arch-cant/vol/111/chest-chatham-1590-1803>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26일)

1917년 전쟁연금계획(War Pensions Schemes)을 전담할 연금부(Ministry of Pensions)를 창설하여 이후 사회보장부(Ministry of Social Security)로 개칭하였고, 1921년 전쟁연금(War Pensions)에 관한 중앙자문위원회(The Central Advisory Committee)의 제출법안 통과로 연금부 관료·제대군인·제대군인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매년 2회 운영되었다. 1948년 전쟁연금자복지서비스(War Pensioners' Welfare Service)가 개시되었으며, 1991년 전쟁연금 이사회가 신설되었고, 1994년 전쟁연금청(War Pension Agency)으로 발전, 사회보장급여청에서 1994년 4월 1일에 독립하였으며, 본청은 잉글랜드 북서부의 도시 블랙폴(Blackpool)에 소재하였다.

2001년 사회보장성 하에 있던 기존의 취업연금청 및 전쟁연금청 업무를 국방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제대군인청(The Veterans Agency)으로 개편하고 협력사무 집행체제로 전환되었고, 1992년 전쟁연금상담센터(The War Pension Helpline)를 신설하여 유선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2000년 4월에는 영국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무료통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05년 4월 6일 '군인연금 '05 계획(AFPS 05: Armed Forces Pension Scheme 2005)⁹ 및 '군인보상금계획(AFCS: 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¹⁰을 실시하였다. 2007년 국방부(Ministry of Defence)는 국군인력행정처(Armed Forces Personnel Administration Agency)와 제대군인청(Veterans Agency)을 통합하여 '서비스 인력 및 제대군인청(Service Personnel & Veterans Agency: SP&VA)'을 설립하였다.¹¹

2. 보훈 관련 법령¹²

영국의 보훈 관련 법률로는 전쟁연금의 역사가 길어 많은 법률이 있으며, 「해군 및 해병급여 및 연금법 1865」(Naval and Marine Pay and Pensions Act 1865)¹³을 비롯한 45건이다.¹⁴ 위와 관련하여 하위 법령으로는 전쟁연금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육·공군 등 상이 및 사망복무연금칙령 1983 NO.883 PENSIONS」(The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 Order 1983)¹⁵을 비롯하여 97건이 있다. 이상과 같은 법률 및 하위법령 중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jsp-764-armed-forces-pension-scheme-2005-afps-05>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28일)

10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compensation-scheme-afcs>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26일)

11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veterans-uk>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26일)

12 한국보훈학회, 앞의 논문, 7면 이하 참조.

1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Vict/28-29/73/enacted>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26일)

표1 영국 보훈 관련 주요 법령

법률	칙령 및 행정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연금법」 • 「전쟁고아법」 • 「연금행정심판법」 • 「폴란드군인정착법」 • 「사회보장법」 • 「국민보건서비스법」 • 「사회보장행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육·공군 등 상이 및 사망복무연금칙령」 • 「전쟁연금령」 • 「전쟁연금위원회령」 • 「해안경비대전쟁연금규정」 • 「해군보충대전쟁연금규정」 • 「상선대전쟁연금규정」 • 「폴란드군대전쟁연금규정」 • 「민간인부상규정」 • 「지역자위대규정」 • 「국내경비대규정」 • 「연금행정심판위원회규정」 • 「엘스터방위연대칙령」

위 표상의 영국 보훈 관련 주요 법령에는 직접 보훈분야에 적용되는 법령만을 명기한 것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은 보훈교육 등 문화 분야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다. 영국은 보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는 등 이에 대해서 보훈문화진흥에 대한 별도의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4 우리나라 보훈선양정책 및 정책홍보의 근거법령은 법률만 16개로 총 44개의 법령 및 규칙이 있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에 관한 개별 법률 및 법규는 다음과 같다. (한국행정연구원, 「대국민 공감 보훈선양정책 발굴 및 홍보방안 연구」, 2013. 11, 66-69면 참조)

국가보훈선양 및 정책홍보 근거법령 분류	
분류	법령명
국가보훈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현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독립기념관법」
예우·단체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기금법/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시행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재향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5 <https://www.legislation.gov.uk/ukxi/1983/883/made>(최종방문일: 2021년 2월 28일)

3. 영국의 보훈교육제도

(1)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1988; ERA)¹⁶

1988년 영국의회는 총 238조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1988; ERA)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입학제도, 재정 및 인사, 국가보조 공영 학교, 고등교육 및 계속교육과 관련된 지방교육 당국의 역할, 고등교육의 재정 및 조직 등과 관련된 개혁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이 법의 핵심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간,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개혁법」(ERA)은 종래에 교육의 목표나 교육과정에 관한 결정 등 교육에 관한 전반사항이 지방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율과 전문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던 것을 상당 부분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의 도입으로 학생이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5세~16세까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종류 및 교육내용, 일정 연령 단계에서 각 교과별로 성취해야 할 성취수준과 평가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국가보훈처에서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하여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¹⁷

(2) 주요 내용

영국 「교육개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공영학교(maintained school)에 대하여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각 지역교육 당국은 소속 공영학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각 공영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이사회(Governing Body) 또는 교장(Head teacher)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제1조 1). 또한, 모든 공영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과 사회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성인생활의 기회와 책임 그리고 경험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제1조 2). 아울러, 모든 공영학교의 교육과정은 그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종교교육과 학교에 등록된 모든 의무교육 연령의 학생들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기초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생이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5세~16세까지) 학습해야 할 교과목, 학습내용, 그리고 도달해야 할 수준이 학년 대신 4개의 ‘주요단계(Key Stages)’별로 제시된다.

주요 1단계(Key Stages 1)는 5세~7세(1~2학년), 주요 2단계(Key Stages 2)는 7세~11세(3~6학

1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8/40/introduction>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0일)

17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0일)

년), 주요 3단계(Key Stages 3)는 11세~14세(7~9학년), 주요 4단계(Key Stages 4)는 14세~16세(10~11학년)에 해당된다. 이 단계의 학생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는 10개의 기본교과(foundation subjects;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지리, 역사, 현대외국어, 음악, 체육, 기술)이며, 그중 핵심기본교과는 3과목(core foundation subjects; 영어, 수학, 과학)이다(제2조 1, 3). 따라서 영국의 보훈교육은 「교육개혁법」의 국가교육과정 기본교과인 역사교육에서 그 근거를 도출해 볼 수 있다.

(3)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및 보훈교육프로그램

오늘날 홀로코스트는 영국에서 모든 어린이들의 공식적인 역사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우는 주된 방법은 국가의 역사 교육과정을 통해서이다.

영국의 어린이들은 「교육개혁법」의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주요 3단계인 보통 9학년(13세~14세)에서 역사 교과과정의 일부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이와 같은 교과목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균형 있고 광범위하게” 교육과정의 일부로 홀로코스트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역사교육을 받게 되지만, 시민권, PSHE(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 종교 연구 등을 통해서도 역사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식적인 수업 외에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은 Trust's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목격과 증언을 들을 수도 있다. 학교 또는 가족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많은 박물관과 기념센터가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런던)
- 홀로코스트센터(노팅엄셔)
- 유대인 박물관(런던)
- 맨체스터 유대인 박물관
- 런던 홀로코스트 및 학살 연구를 위한 위너 도서관 연구소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데이

특히, 홀로코스트의 가장 대중적인 교육 형태는 매년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데이(HMD)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 날은 아우슈비츠 해방 기념일인 매년 1월 27일로 2001년에 처음 열렸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이런 행사를 개최한 나라 중 하나이다.

아울러, 영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돕기 위해 1921년부터 설립된 왕립영국군단¹⁸도 영국 전역에서 추모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지원을 포함한 주요 단계별 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고 있다.

18 <https://www.britishlegion.org.uk/>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0일)

표2 주요 단계별 교육지원

구분	주요 1단계	주요 2단계	주요 3단계	주요 4단계
주요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세~7세 교육에 적합 창의력을 활용한 추모지원 시, 비디오, 원본 사진 및 삽화, 대화형 교육자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세~11세 교육에 적합 북클럽, 팩트 파일, 참전 영화, 원본 사진 및 대화형 교육자료 서면, 오디오 및 시각자료를 활용한 핵심 교육자료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세~14세 교육에 적합 참전영화, 문학, 사진 및 음악 포함 토론, 창의성 및 성찰 교육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세~16세 교육에 적합 문학 및 사진 예제, 상세한 팩트 파일 및 토론 교육 포함 창의적인 글쓰기 및 토론 교육지원
공통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다운로드 및 국가교육과정과 연계 차별화된 지원 및 교육 제공 교사 및 학부모 지원 웹일츠어 사용 가능 			

출처: 연구자 재구성

III. 영국의 보훈제도의 조직 및 기능

1. 제대군인청(Veterans Agency)¹⁹

제대군인청은 국방부 내의 조직체로서 제대군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정보, 도움, 조언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제대군인청의 상담 서비스 담당자는 혜택, 복지문제, 전쟁연금, 보상, 복무기록, 훈·포장 및 군인 묘지 같은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제대군인청은 제대군인 단체와 자원봉사 조직 및 사회복지청 같은 법률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제대군인청은 전쟁연금계획을 관장하며, 그 계획은 영국 및 아일랜드 그리고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퍼져있는 약 275,000명의 전쟁연금 수령자와 사망자의 배우자들에게 재정 및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제대군인청의 주요 기능

제대군인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관련 법령과 현대적 의료 및 과학적 이해에 바탕을 두어 전쟁연금계획 관장
- 전쟁연금 수급권자와 전쟁미망인, 그들의 부양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¹⁹ 제대군인청의 주요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는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veterans-uk> 참조(최종방문일: 2021년 2월 28일).

- 1947년 폴란드 재정착법에 근거하여 주거 및 영양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전문적 기준에 적합하게 일포드 폴란드 홈(Ilford Polish Home)을 관장
- 정부의 추진방향에 따른 제대군인공동체의 각종 서비스의 조정과 관장 및 전달
-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포로로 고생한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 예우금 지급제도 관장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국방부의 의견 전달을 위한 핵심 조정자로서의 역할
- 국방부에 전쟁연금 정책문제에 대한 의견과 전달

그 외 세부적인 하부기능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 전쟁연금증양자문위원회(CAC)와 전쟁연금위원회(WPC)에 집행지원을 제공
- 특정 자선기구에 대한 정부 임명권자의 지명 관장
- 전쟁연금수급권자, 전쟁미망인 및 전쟁연금위원회(WPC)를 대표하는 제대군인 단체의 각종 명예 수상에 대한 지명 조정
- 병원관장위원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더블린에 있는 레퍼드타운 병원운영에 기여

3. 제대군인청의 조직

- 기관장과 실무 총책임자: 장관급(Minister) 겸 국무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실무 총책임자(Chief Executive)
- 하부조직: 운영국장, 기획국장, 의료국장 등 3국장과 8개과 및 그 산하 20개 팀
- Nelson전쟁연금기록팀: 벨슨기록보관소의 관리·유지·자료검색
- 상이자 전담팀: 등록신청 접수·심사·결정, 의학적 의견 제시, 수당결정 및 지급, 행정심판 수행
- 미망인 전담팀: 미망인에 대한 업무수행
- 기타 대상자 전담팀: 극동아시아 포로, 상선선원, 민간인 등에 대한 업무수행
- 진료팀: 진료수당 및 진료 관련 서비스
- 정책팀: 법령의 입안·해석 등
- 규정팀: 각종 규정의 제·개정
- 서식팀: 각종 서식의 입안·제작·배포
- 사업분석팀: 관리정보통계, 행정서비스 제고
- 고객봉사팀: 민원 처리

- 업무지원팀: 행정심판 자료발송, 은행 관련 업무, 거동지원업무, 국방부 업무협조, 상담전화 운영
- 기획팀: 사업기획·쇄신
- 용도팀: 구매, 계약
- 보안팀: 정보·연금·건물·장비의 보안
- 기술서비스팀: 전산장비
- 전쟁연금전산팀: 소프트웨어의 개발, 재정관리

4. 제대군인청의 소속기관 및 자문기관

(1) 소속기관

제대군인청의 소속기관으로 복지사무소(War Pensioners Welfare Office)가 존재한다. 동 기관은 보훈대상자의 어떤 문제든지 상담·알선·해결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 우리나라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과 유사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전국을 13개 권역에 28개 사무소(대형사무소 5개)로 구성
- 대형사무소장이 관할 소형사무소장을 통제
- 사무소별 인원은 운영규모에 따라 3명~15명 구성

(2) 자문 기구

1) 전쟁연금위원회²⁰

전쟁연금위원회는 연금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1년 「전쟁연금법」에 의해 최초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1989년 「사회보장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1990년 「전쟁연금위원회령」을 두고 있다. 위원들은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금 재결과 집행, 미망인과 유기된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와 전쟁상이연금의 계획 및 집행과정을 맡고 있다. 영국 전역에 걸쳐서 13개의 전쟁연금위원회가 있으며, 위원들은 장관에 의해서 임명되고 중앙에 1개의 중앙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전쟁연금계획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²⁰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veterans-advisory-and-pensions-committees-x13/about> (최종 방문일: 2021년 3월 2일) 참조.

2) 연금 및 보상에 관한 중앙자문위원회(Central Advisory Committee on Pensions and Compensation)²¹

중앙자문위원회는 전쟁연금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제대군인청장이 제출한 여러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주요 기능의 하나는 전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및 정책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다. 중앙자문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연 2회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정기적으로 협의업무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쟁연금담당 정무차관, 위원은 사회보장부 공무원, 제대군인, 전쟁연금위원회 대표 12인 이상, 상이군인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전쟁연금 및 보상재판소²²

전쟁연금 및 보상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판사, 의료인, 군인으로 구성된 전쟁연금 및 보상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1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2년의 경과 후에는 전쟁연금 및 보상재판소에 어떠한 결정에 대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재판소인 행정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전쟁연금 및 보상재판소는 의회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었으며, 제대군인청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다. 그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적 관점에 따라 법원에 상소하는 경우나 최초의 청문 이후에 추가로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V. 영국의 주요 보훈·추모사업 및 홍보정책

영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 및 기념사업과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위한 시설을 설치·관리하고,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이고 있다. 주요 보훈기념 및 추모사업²³은 다음과 같다.²⁴

21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entral-advisory-committee-on-pensions-and-compensation/about>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일)

22 <https://www.gov.uk/war-pension-armed-forces-compensation-tribunal>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일)

1. 주요 보훈기념 및 추모사업

표3 주요 보훈기념 및 추모사업

구분	주요 내용
관장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묘지 관리 영연방전쟁묘지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영국 메이든헤드(Maidenhead) 시 - 전 세계 5개지역사무소(Area Office), 12개 위탁기관(Agency) - 재정은 6개 회원국 정부가 묘의 수에 비례하여 부담 - 민간묘지나 교회 정원의 묘는 지방정부와 해당 교회에 위탁
추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영(全英) 추모수목원(National Memorial Arboretum)²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태퍼드 주(Staffordshire) 탐워드(Tamworth) 근처 위치 - 매년 2만명 이상의 공식 및 비공식 교육방문을 포함하여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매년 약250개의 현장 행사가 개최됨. - 추모수목원 내 입구에는 예배당이 설립되어 담당 목회자의 집전으로 정기적인 추모예배를 진행하며, 추모 이외에도 살았던 생명을 축하하고 잃어버린 생명을 기념하는 연중 공간으로 직접 보고 연구하는 기획의 장을 제공함. 일포드 공원 폴란드 홈(Ilford Polish Home)²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12월 16일 대대적인 보수와 함께 정식 개원함. - 영국 남서부 데본(Devon) 지역에 위치하며, 1947년 폴란드 재정착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지휘하에 있던 폴란드군의 전구성원과 그 배우자를 위한 주거 및 요양보호가 부여되며, 제대군인청(Veterans Agency)에서 관장함. 영연방묘지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²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7년에 설립되었으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영연방군의 170만 명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음. - 6개 회원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전 세계 23,000곳에 묘지를 세우고 유지하고 있음. 세너터프(The Cenotaph)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런던시내 중심부인 내각건물과 수상관저가 있는 화이트 홀 거리(Whitehall Street)에 위치하고 있음. - 매년 11월 국립기념관이 되는 곳으로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의 참전한 모든 영국 및 영연방 군인 및 민간 군인의 공헌을 추모하는 기념비임.

23 우리나라의 국가보훈법률별 행정대상

법률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사망자(행불자)·부상자·기타 희생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5년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부상자·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출처: 국가보훈처 서기관 한국성, 정부기념 및 추모행사를 통한 예우방안 - 국가보훈관련 기념 및 추모행사 중심으로 -, 2019. 11. 4-5면 참조.

24 우리나라의 주요 보훈행사로는 매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4월 19일 4·19혁명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6월 25일 6·25기념행사,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등이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보훈기념 및 추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충일(Remembrance Day,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대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를 기념하여, 추모행사는 현충일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Remembrance Sunday) 11시에 거행함. - 매년 11월 11일 11시에 2분간 침묵(Two Minutes Silence)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추모 전통으로 운영됨. - 추모행사의 주요 내용은 전사자에 대한 묵념과 양족 · 정부요인 · 각군 · 참전군인 및 미망인들이 재향군인회 산하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작한 양귀비 꽃다발을 헌화하는 것임. - 양귀비 추모운동(Poppy Appeal)은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향군인회 산하 공장에서 제작한 모조 양귀비를 달아주는 모금 운동임. - Armistice Day(제1차 세계대전 휴전 기념일)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기념관, 추모수목원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충일(Remembrance Day,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1918년 11월 11일)과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 국군의 날(Armed Forces Day; 기존 재향군인의 날) - 영국군의 복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6년 6월말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연례 기념행사임.

출처: 연구자 재구성

2. 주요 보훈선양 홍보정책

표4 주요 보훈선양 홍보정책

구분	내용
홍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 및 홍보정책 주관부처 <p>영국 국가보훈처(Veterans UK)²⁹</p>
홍보정책 기초	제대군인공동체와의 소통개선 및 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보훈프로그램 기초 형성
홍보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veterans-uk • 페이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facebook.com/modveteransuk/ • 트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twitter.com/VeteransUK_MOD • 유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youtube.com/defenceheadquarters • 블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veteranstoday.blog.gov.uk/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행사 • 안보교육 • 보훈상징 공간조성 • 컨퍼런스 개최

25 <https://thenma.org.uk/>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5일)

26 <https://www.gov.uk/guidance/ilford-park-polish-home#ilford-park-today>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5일)

27 <https://www.cwgc.org/who-we-are/our-history/>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5일)

28 <https://www.english-heritage.org.uk/visit/places/the-cenotaph/>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5일)

29 영국의 기존 보훈 및 홍보정책 주관부처는 SPVA(Service Personnel and Veterans Agency)였으나, 2014년 4월 1일 국가보

구분		내용	
주요 정책 홍보사업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및 소식 • 발간물 탑재 • 각종 서식 및 기타 자료 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관련 배경 지식 제공 • 연례보고서 •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연계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일 Poppy Day(Remembrance Day) • Veterans World Newsletter 발간 • 보훈관련 컨퍼런스 개최 • 보훈관련 교육 DVD 제작 •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x) 연계 운영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대국민 공감 보훈선양정책 발굴 및 홍보방안연구, 2013. 11, 70면~71면 참조.; 연구자 재구성

V. 나가며

보훈선양은 보훈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훈선양 정책과 보훈기관 등의 연구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훈문화 형성은 단시일 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조금하게 추진하였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공존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전망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영국의 보훈제도 및 관련법령은 전쟁연금제도와 국방부 내의 조직체인 제대군인청을 중심으로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제대군인을 존엄한 가치로 영구히 존중함으로써, 직업 활동 중의 재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주요 보훈선양 및 추모사업 등은 국방부(Ministry of Defence)와 영연방전쟁묘지위원회(CWGC)를 주축으로 한 각종 추모시설 등에서 관행 및 독자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주요 보훈선양 홍보는 영국 국가보훈처(Veterans UK)가 제대군인공동체와의 소통개선 및 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보훈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정책기조로 온·오프라인의 홍보수단과 정책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훈문화 확산과 정책홍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보훈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국의 정부 중심의 보훈문화에 관한 법제와 영연방전쟁묘지위원회(CWGC)와 국방부(Ministry of Defence)를 주축으로 한 각종 추모시설 등에서 관행 및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보훈선양 및 추모사업 등은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에 의한 보훈문화 정책추진에서 제기될 있는 정치적 편향

훈처(Veterans UK)로 통합되었다.;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service-personnel-and-veterans-agency>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6일)

성과 거부감으로 대국민 행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³⁰ 그리고 영국의 각종 추모시설 및 기념행사 등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보훈 및 교육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정신을 체험하면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³¹ 특히,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연계한 주요 보훈정책에 대한 홍보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반영 및 젊은 세대의 성향과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선양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영국의 보훈교육은 「교육개혁법」의 국가교육과정에 연계하여 학교의 교사와 가정의 학부모 까지 추모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호국보훈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30 한국행정연구원, 앞의 논문, 157면 참조.

31 유영욱, “한국보훈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34권, 2005. 03, 307면 이하 참조.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서기관 한국성, “정부기념 및 추모행사를 통한 예우방안 - 국가보훈관련 기념 및 추모행사 중심으로 -”, 2019.
- 국가보훈처, <https://www.mpva.go.kr>
- 국립서울현충원, <http://www.snmb.mil.kr>
- 박용성, “국가보훈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 정책변동모형을 결합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적응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2호, 2015.
- 박중훈·류현숙·김윤희·박정우,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 서운석, “한국민의 보훈의식에 대한 인과구조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1.
- 유영옥, “한국보훈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34권, 2005.
- 이홍재·차용진, “보훈 관련 정부기념행사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 대학생 인식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1호, 2016.
- 전신욱·신윤창, “한국 보훈문화의 정립실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 정원준·최진봉, “공중의 세분화로 분석한 국가 보훈행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참여도 차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보훈 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 홍보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4.
- 최수웅, “해외 한민족 문학작품을 활용한 보훈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7권 제1호, 2008.
- 한국보훈학회,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 영국·캐나다·이스라엘·일본·중국 -”, 2006.
- 한국행정연구원, “국가보훈 기능 강화 및 보훈행정조직 발전 방안 연구”, 2002.
- 한국행정연구원, “대국민 공감 보훈선양정책 발굴 및 홍보방안 연구”, 2013.
- CWGC, <https://www.cwgc.org>
- english heritage, <https://www.english-heritage.org.uk>
- GOV UK, <https://www.gov.uk>
- House of Commons Library, Louisa Brooke-Holland, Claire Mills, The Armed Forces Covenant and status in law, 2020.
- KAS, <https://kentarchaeology.org.uk>
-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
- Ministry of Defence, Armed Forces Pension Scheme 2005, 2020.
- National Memorial Arboretum, <https://thenma.org.uk>

KLRI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